

의안번호	제 64 호
의결 연월일	1996. 3. .

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. 1. 26. 예산군수
 나. 회부일자 : 1996. 1. 26.
 다. 상정일자 : 1996. 3. 8.

제46회 (임시회) 제3차 총무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 (내무과장 : 이경희)

가. 개정이유

- 공직사회의 도덕성, 윤리성 고취를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,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,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(안 제7조제2항).

-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 (안 제18조제1항).
-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을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2조제5호 및 제6호).
-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3조제5항제5호).
-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(안 제23조제6항).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: 임치빈)

가. 개 정 배 경

-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예산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며, 이번에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 (대통령령 제14,825호, '95. 12. 14)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이첩 (총무 12146-2, '96. 1. 4)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개정 사항중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균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공무원이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6일이내의 포상휴가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며,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문화 하였음.